

## 업무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콘텐츠진흥원”이라 한다)과 한국무역협회(이하 “무역협회”라 한다)는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- 다 음 -

**제1조 (목적)** 본 협약은 상기 기관들(이하 “양 당사자”라 한다)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,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업무협약의 범위)** 양 당사자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확대, 유망 콘텐츠와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속 업무에 상호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.

- ① 콘텐츠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하고,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, 국내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.
- ② 금융·정책·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력하고, 국내외 세미나, 전시회 등 행사개최 시 상호 협력한다.
- ③ 콘텐츠산업과 제조업 간 융·결합 및 상생·협력으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상호 지원하고,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
**제3조 (정보 제공)** 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, 고객 등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4조 (신의성실의 의무)** 양 당사자는 본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5조 (비밀유지의 의무) 양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 
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 
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, 배포 또는 유출시켜서는  
안된다.

제6조 (협약 기간) 본 협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 
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 
변경한다.

제7조 (협약의 해석 등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 
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, 합의가  
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.
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당사자들이 서명하여  
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7월 6일

한국콘텐츠진흥원      한국무역협회

원 장 김 영 준

회 장 김 영 주

김 영 준 

김 영 주 